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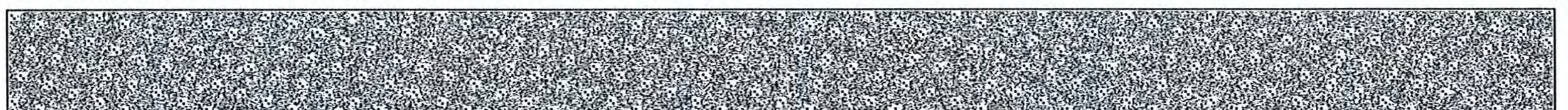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0748 무기정확처분무효 확인의소
원 고 [REDACTED]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28, 501호(삼송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법인사무처(남송리, 한동대학교)
이사장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정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한동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고, 피고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무감독양심시험제도, 한동명예제도, 금주 및 금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적 생활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다. 피고 대학교의 미등록 학생자치단체인 '들꽃'은 2017. 12. 8. 피고 대학교 학생회관 물음표카페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과거 들꽃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의 개최 과정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 대학교는 2017. 12. 8. 13:30경 들꽃에게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들꽃 회원 학생들과 원고는 피고 대학교의 불허가 통보에 항의를 하며 학생지원팀 및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 들꽃은 예정대로 2017. 12. 8. 19:00경 피고 대학교 학생회관 물음표카페에서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가 열리는 강단 앞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설치하고 위 강연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하였다.

바. 피고 대학교는 2017. 12. 14.과 같은 달 22. 이 사건 강연회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들꽃 회원 학생들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 대학교는 2018. 1. 15. 원고와 들꽃 회원인 ■■■■■, ■■■■■, ■■■■■, ■■■■■, ■■■■■, ■■■■■에게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이하 '1차 특별지도'라 한다)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 ■■■■■, ■■■■■, ■■■■■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아. 피고 대학교는 2018. 1. 26. 원고에게 다시 특별지도(이하 '2차 특별지도'라 한다)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자. 피고 대학교는 2018. 2.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8. 3. 10.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학교는 2018. 5. 2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학생 징계 결과 통지서

1) 원고는 2017. 12. 8. 학생처장에게 “검열행위이고 학생·주최 측에 대한 압박, 인권탄압 그리고 사상통제에 해당하므로 공론화 하겠다”, “저는 교수님이 걱정됩니다. 지금 한동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탄압인지 보셔야 합니다”, “교수님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4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1징계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집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집회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연회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호에 규정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강연회 강단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등의 피켓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하였는데, 이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호 내지 제13조 제5호에 규정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외부 언론 등에 학교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생처장이 자신의 성적지향 및 사생활을 아웃팅하였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호 내지 제13조 제5호에 규정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 한다).

5) 원고는 2018. 1. 17. 개최된 1차 특별지도 면담에서 학생지도위원회의 특별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8. 1. 29. 개최된 2차 특별지도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 한다).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위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 결정을 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강연회를 주최한 '들꽃'의 회원인 ■■■■■, ■■■■■, ■■■■■ 등은 피고 대학교로부터 특별지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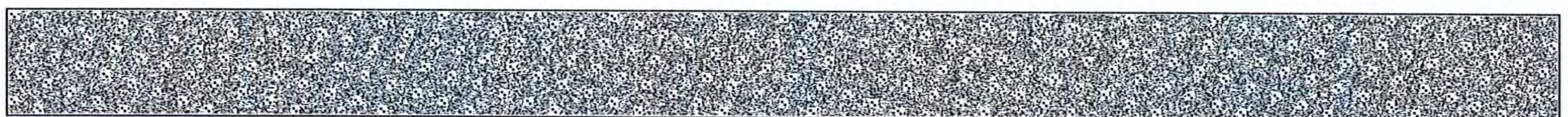


2. 원고의 주장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고등교육법상 학칙으로 볼 수 없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바, 피고 대학교의 '학칙'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징계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설령 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 징계규정으로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강연회와 관련하여 의견대립 과정에서 학생처장에게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교직원에 대한 심히 불손한 언행으로 볼 수 없고, ② 들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강연회를 주동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강연회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집회 전에 학생처장으로부터 집회 신고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대학교의 학칙은 위헌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연회는 허가 받지 않은 집회로 볼 수 없으며, ③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피켓을 이 사건 강연회 강단에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한 사실은 있지만,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 대학교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원고는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가 부당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원고의 특별지도 거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한 들꽃 회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하는 등 형평에 반하





고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근거한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등교육법 제6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학교규칙(학칙)에는 제1호부터 제17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호부터 제17호의 사항이 단일한 학칙에 모두 규정될 필요는 없고, 학교의 장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학칙에 분산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의 사전공포, 심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개)학칙의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언상 고등교육법령도 학칙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등교육법 제6조에서 의미하는 학칙이란 '학교규칙'의 줄임말이므로, 실제 명칭이 학칙일 필요는 없는 점, ④ 삼권분립하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국가법



령 체계와 달리,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징계에 관해 학칙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는 성문의 학교규정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그 규정이 구성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이란 고등교육법 제1호부터 제17호의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고, 그 명칭을 불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대상(제9조), 징계의 요구(제10조), 징계의 구분(제11조), 징계의 기준(제12조 내지 제15조), 징계심의 절차(제16조)를 정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피고 대학교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피고 대학교의 학칙과 비슷한 시기인 1995. 7. 1. 제정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학생에 대한 상벌을 진행하여왔고(위 규정에 관해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학내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학교의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무효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임명령의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276 판결 참조),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9221 판결 참조) 등에는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대학교의 학칙 제60조는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이 학칙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면학질서를 방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징계절차나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고등교육법과 피고 대학교 학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대학교의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서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징계의 대상(제9조), 징계의 구분(제11조), 징계절차(제16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과 피고 대학교의 학칙,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피고 대학교 학칙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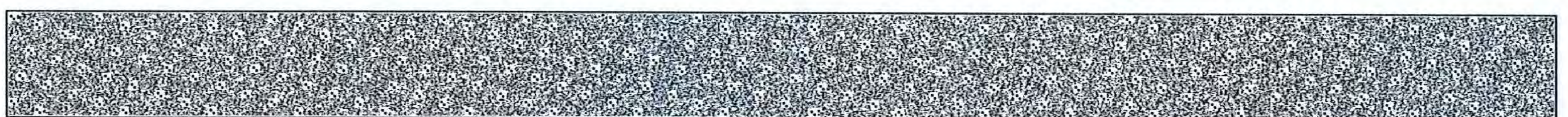
2)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관계 교직원의 사건경위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의 동석을 불허하였고, ③ 징계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징계사실을 비공개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대학교 학칙 제60조 제1항 및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내지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되는 각 규정의 문언상 관련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학생처장이 48시간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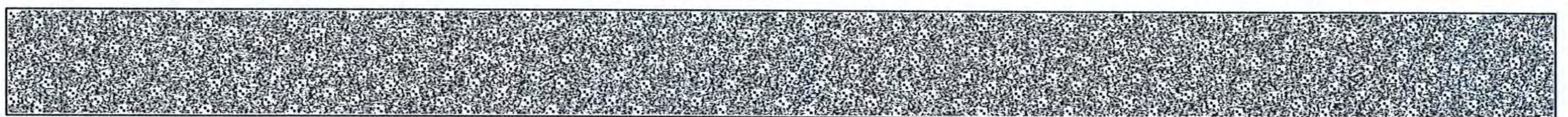
② 피고 대학교가 2017. 12. 15. 원고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7. 12. 25. 이 사건 강연회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대학교가 2018. 2. 19. 원고에게 '2018. 2. 20. 17시에 징계심의회 개최될 예정이니 2018. 2. 20. 12시까지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할 예정이며 2018. 2. 20.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 대학교는 2018. 2. 20. 원고에게 '2018. 2.





22. 13시에 현동홀 2층 비전회의실에서 징계심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변호사의 참석은 불가능하나 변호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8. 2. 22. 13시에 현동홀 2층 비전회의실에 방문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자리에 없었고, 원고가 피고 대학교와 연락을 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교외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여 징계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3. 1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 개최된 재심 회의에 불참한 사실, 피고 대학교가 거듭하여 원고에게 재심 회의 참석 여부와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서 재심 회의를 2차례 연기한 사실, 원고가 2018. 5. 10. 피고 대학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 및 피의자신문 등 수사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로, 교내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변호인의 동석권'이 반드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명시한 규정도 없는 점(의견서 작성 등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다),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견진술에 있어 변호인의 동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각 사실관계로 인하여 피고 대학교로부터 2번이나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고, 교직원과의 면담, 진술서, 성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피고 대학교가 원고의 항의를 수용하여 징계심의 개최일을 2018. 2. 22.로 연기하였으므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2. 22.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최종진술을 할 기회를 가졌고, 그 후 진행된 재심 과정에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이상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한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대학교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을 2018. 2. 22. 원고의 부모님에게, 2018. 2. 28. 원고에게 각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통보를 받고 2018. 3. 10.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받아 불복하는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실 통보와 관련된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진이 원고의 징계사실을 공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들꽃 회원 학생들은 2017. 12. 8. 피고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강연회의 불허가 통보를 받자 피고 대학교의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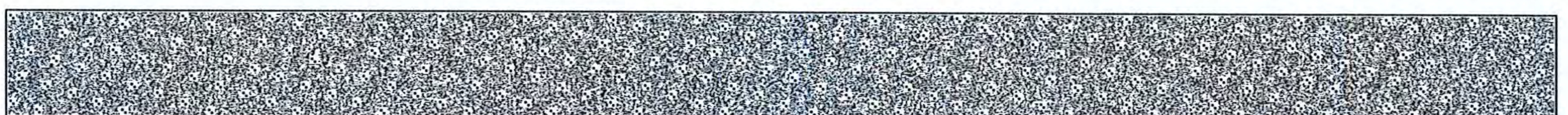
(2) 피고 대학교의 학생처장은 위 면담과정에서 원고와 들꽃 회원 학생들에게 "너는 헌법으로 가, 헌법으로, 나는 학교 얘기하는 거고", "너는 혼자 그럼 따져봐, 여기는 학교라니까?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려면 학교 밖에서 얘기해", "너 이 녀석, 내가 하는 말 못 들어? 피고 대학교 교수로서, 한동대 이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대학교의 학생처장에게 "이는 검열행위이고 학생·주최 측에 대한 압박, 인권탄압 그리고 사상통제에 해당되므로 공론화 하겠다", "저는 교수님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공론화 됐을 때 교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똑똑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동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탄압인지 보셔야 합니다", "교수님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 16,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학교의 학생처장과 면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강연회 불허 통보에 관한 논쟁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난 언행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호에서 정한 '교직원





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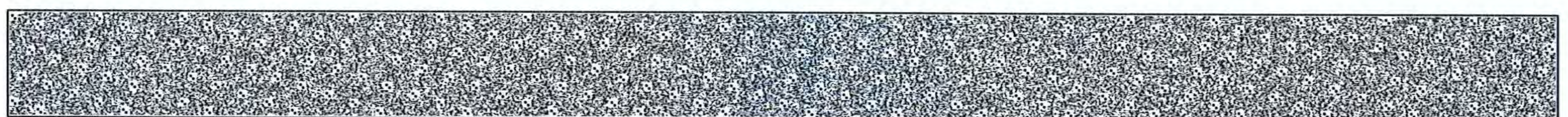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학교는 2017. 10. 30. 글로벌리더십학부로부터 '2017. 11. 10. 19:00부터 22:00까지 피고 대학교 오석관 405호에서 외부강사 특강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받았고, 2017. 11. 7. 국제어문학부로부터 '2017. 11. 24. 19:00부터 22:00까지 피고 대학교 오석관 405호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받아, 위 각 집회를 허가하였다.

(2) 들꽃은 2017. 11. 10. 19시에 피고 대학교 오석관 405호에서 '너가 없는 노동의 챗바퀴를 벗어나, 사람답게'(■■■■■, 대표저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2017. 11. 24. 19시에 피고 대학교 오석관 405호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대표저서: 페미니즘과 정신분석)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각 개최한다는 내용의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였다.

(3) 들꽃은 2017. 11. 15. 포항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2017. 11. 24. 개최 예정인 강연회를 취소하였고, 이후 2017. 12. 8. 피고 대학교 학생회관 물음표카페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를 주제로 한 이 사건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들꽃은 피고 대학교 총학생회에게 지원금 요청을 하면서 '현대사회 여성에 대한 억압기제',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선' 두 가지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성애 관련 논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총학생회는 들꽃의 예





산 및 공간지원 요청을 승인하였다.

(5) 피고 대학교는 2017. 12. 8. 13:30경 들꽃에게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들꽃 회원 학생들과 원고는 피고 대학교의 불허가 통보에 항의를 하며 학생지원팀 및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6) 피고 대학교는 교내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학칙을 두고 있다.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대학교 학생단체의 등록·운영 및 학생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단체의 활동)

② 모든 행사는 집회 신고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야간 옥외 집회시에 햇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릿, 티켓 기타 홍보물 등의 제작·인쇄·배부·게시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생 간행물 발간규정에 의한다.

⑥ 매 학기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행 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단종교활동)

② 이 대학교내에서의 어떠한 이단적 사상에 근거한 종교 교육관련 모임, 집회, 개인학습 등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 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이 무효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 법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¹⁾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학교의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이 위헌적 내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기본권 충돌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09 결정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참조),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

1) 사립대학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며, 사립대학의 학칙에 관한 문제도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7. 9. 26. 선고 2017헌마1022 결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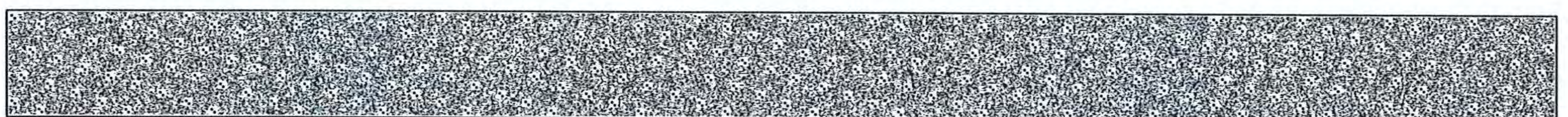
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는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뿐 아니라, 학사운영의 전반에 미친다. 대학의 학칙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사항뿐 아니라, 학문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대학학사와 대학질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정한 대학의 자치법규로서 그 제정 및 개폐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 내지 대학자치의 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교육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집회를 함에 있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피고 대학교 학칙의 효력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로 피고 대학교의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은 피고 대학교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학 자치의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교육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며, 학교 구성원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어, 위 학칙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② 우리 헌법이 사학의 자유와 더불어 종립대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대학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즉 종립대학교인 피고 대학교에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학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적어도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 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③ 피고 대학교 학생인 원고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집회의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 개최를 학내에서 제한하는 피고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원고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원고로서는 학교 외의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충하는 기본권은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④ 강제로 배정되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건학이념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자유의사와 자기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에 입



학한 학생으로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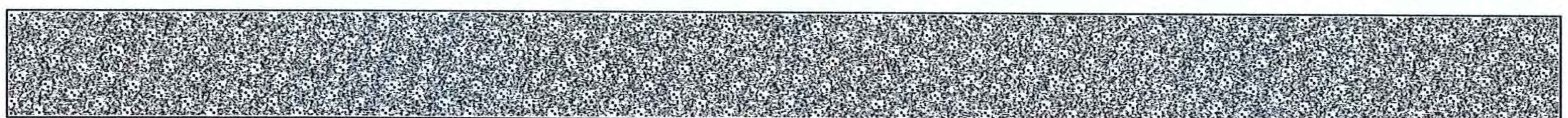
⑤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강연회가 개최되는 당일에도 이 사건 강연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다른 교직원 내지 학생들과 의견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강연회가 허가받은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대학교의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행사는 집회 신고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들꽃이 피고 대학교에 2017. 11. 10. 피고 대학교 오석관 405호에서 외부강사 특강을, 2017. 11. 10. 기본소득에 관한 특강을 하겠다는 집회 신고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강연회에 관하여 집회 신고원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총학생회가 학생처장을 대신하여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 대학교의 학생지원팀과 학생처장이 들꽃 회원들과 원고에게 이 사건 강연회에 대하여 불허 방침을 통보하였으나 원고와 들꽃 회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사건 강연회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강연회는 피고 대학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어서 학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학교의 학생 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은 '매 학기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행 종료시까지의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말시험 1주일 전에 피고 대학교에서 다수의 집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이 사문화되어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학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들꽃도 위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집회 신고원을 작성하여 피고 대학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 홍보 포스터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허가를 받은 신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생처장에게 집회 신고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와 홍보 포스터를 승인받는 절차는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집회 관련 홍보 포스터에 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집회 신고원 제출 없이도 집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들꽃이 이 사건 강연회와 관련하여 집회신청을 하지 않았고, 집회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들꽃과 원고가 이 사건 강연회를 강행한 사실은 학칙을 위반한 행위로써 정당한 징계사유(피고 대학교 학칙 제60조 제5호,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호)로 인정된다(다만 '무기정학'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살펴본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학교는 2017. 5. 25.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는 내용의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피고 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강연회가 열리는 강단 앞에 '동성애 혐오는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설치하고, 위 강연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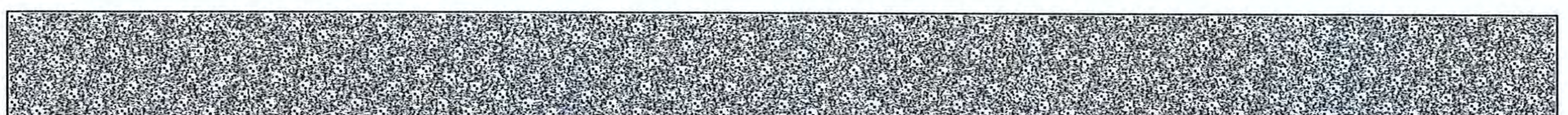
살피건대, 원고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학교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4)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학교의 학생처장은 2017. 12. 11. 피고 대학교의 교수, 직원 및 한동신문사에게 "다부다처로 살고 있다는 ■■■이라는 작가와 사귄다는(학생들이 알려주더군요) 남학생은 다름 아닌 저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학생이더군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 대학교는 2018. 1. 5. 원고에게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사는 것을 공공연하





게 드러냄으로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피고 대학교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에 관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8. 1. 7. 페이스북에 '한동대는 대학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동대가 징계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하고 개인 SNS를 사찰하는 일, 개인의 성적 지향(관계 지향)을 폭로하고 비방하는 일, 헌법을 무시하고 학칙을 앞세워 학습권과 학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는 한동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위 사실은 2018. 1. 8. 경향신문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4) 원고는 2018. 1. 10. 오마이 TV의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 대학교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8. 1. 12.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피고 대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인터뷰 내용과 표현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밖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으로 보일 뿐 피고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2. 8. 28. 신설된 학생상벌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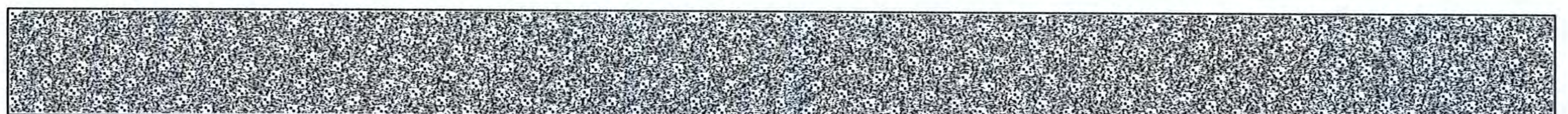
한 규정 제11조의 2는 '학생을 징계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특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학생처장의 결정으로 교내·외 상담기관에서의 상담, 사회봉사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특별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연혁,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특별지도는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피고 대학교는 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갈음하여 특별지도를 할 수 있고, 학생이 특별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지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별지도에 불응한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별개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이 그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행사하는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대학의 자율성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 점,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징계권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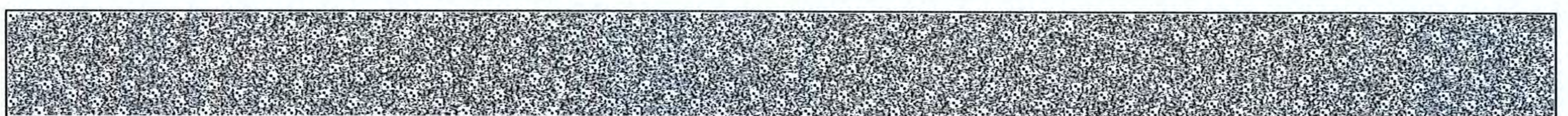
형평이 유지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 및 한계를 일탈한 징계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에서 본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 4, 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적시된 부분도 '학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이다.

② 피고 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에 대하여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주동자란 '자기 이름 또는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회에 뜻을 같이하여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자는 주동자와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강연회의 사전 준비와 논의, 진행 등에 일부 참여하고, 학생처장에게 이 사건 강연회 불허가 통보에 관하여 들꽃 회원들과 함께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를 자신의 이름과 책임 아래 개최한 들꽃의 회원이 아니며, 이 사건 강연회의 패널이나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불허가된 강연회에 관여하고 참석한 행위는 학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이기는 하나 무기정학 처분에 이





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원고뿐만 아니라 들꽃 회원인 ■■■■■, ■■■■■, ■■■■■, ■■■■■도 피고 대학교의 특별지도 조치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학교는 원고에 대하여만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 대학교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징계기간 또한 제한이 없이 오직 담임교수, 소속 학과(부)장이 학생에 대한 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학생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징계가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⑤ 피고 대학교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데, 무기정학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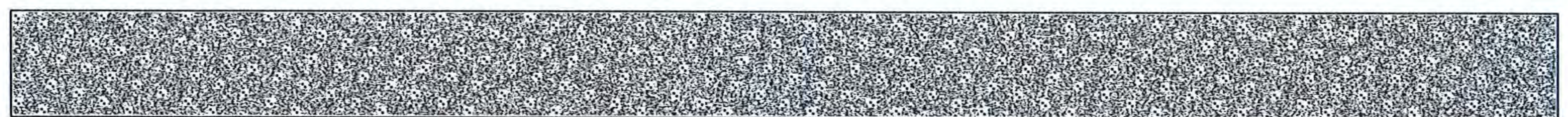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 1. 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동대학교 학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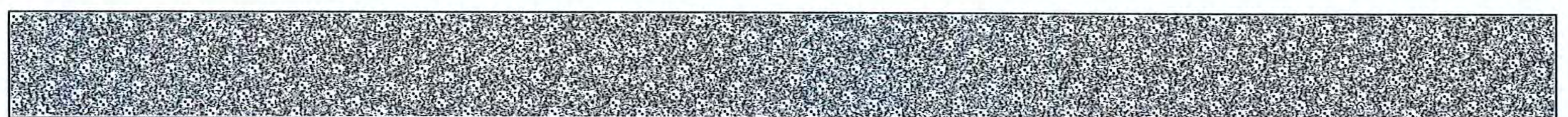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훈의 실천과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훈,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이 대학교의 교훈, 교육이념, 교육목적, 그리고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훈: 사랑, 겸손, 봉사
2. 교육이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세





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3.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에 기반 한 수준 높은 교수·연구를 통해 참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을 진흥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
4. 교육목표: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세계시민 소양, 그리고 훌륭한 기독교적 인성, 특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한다.

제55조(학생지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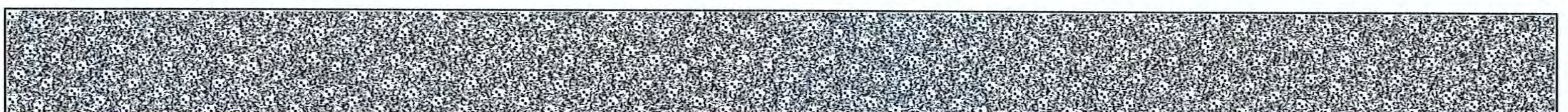
- ① 학생자치 활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목실장, 학생생활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징계)

-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이 학칙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면학질서를 방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4.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9조 및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위반하거나 학교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학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며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4. 총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
5.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6. 학원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학생
7. 기타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0조(징계의 요구)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 경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생처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2. 징계 대상 학생의 진술서(본인의 거부시 생략할 수 있음) 1부(별지 제5호 서식)
3. 담임교수 및 학과(부)장 의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2(특별지도)

- ① 학생을 징계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특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거나 학생처장의 결정으로 교내·외 상담기관에서의 상담, 사회봉사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특별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 ② 학생처장의 결정으로 특별지도를 받도록 할 경우 추후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근신처분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자
2. 수업 태도가 불량한 자
3. 문화 윤리 규범에 어긋나고 언행이 불량한 자
4.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 자
5.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 상태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또는 지정된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한 자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3조(유기정학 처분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폭행을 가한 자
2.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4. 고사중 부정 행위 자(사전 준비 등)





5.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6. 두 번이상 근신처벌을 받은 자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4조(무기정확 처분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확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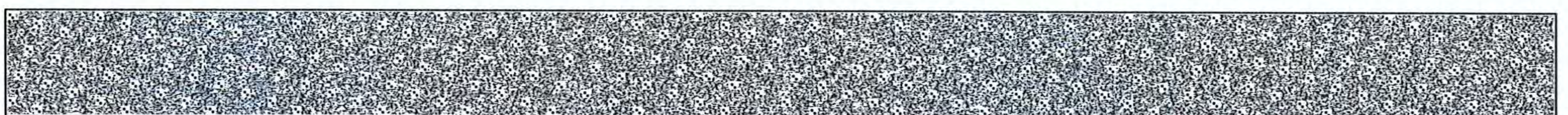
1. 집단 폭행을 한 자
2.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
3. 고의로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고사중 대리시험 등 극심한 부정행위 자
5. 허가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
6.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
7. 학교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8. 실형선고를 받은 자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5조(제적처분의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을 처할 수 있다.

1. 흉기를 사용하여 심한 부상을 가한 자
2.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3.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자
4. 재학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자
5.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한 자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6조(징계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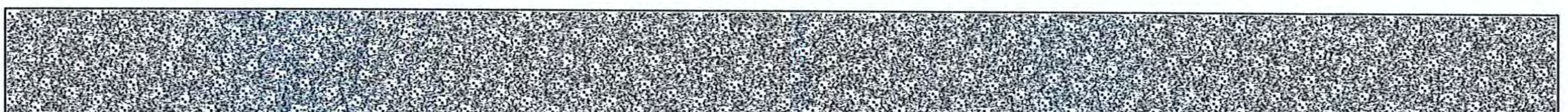
-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담임교수 또는 관계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징계 및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기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징계의 해제)

-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다만, 총장은 징계기간 중 품행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무기정학의 해제는 담임교수, 소속 학과(부)장이 학생에 대한 지도 결과 보고서와 징계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학생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통보)

- ①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담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서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끝.





정본입니다.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주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